

대구예술대학교 성희롱 예방지침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,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, 제2항 및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대구예술대학교내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대구예술대학교 소속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

제3조(성희롱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“성희롱”이란 남녀차별금지 및구제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.

제4조(총장의 책무) 총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,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·운영,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, 성희롱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.

제5조(성희롱 예방교육)

① 사무처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시기·내용·방법 등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,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,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
2.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3.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4.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
5. 그 밖의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

③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성희롱 고충 상담원(이하 “고충 상담원”)은 교육일시·방법, 교육내용, 교육 참석자 명단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고충전담창구)

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·처리를 위하여 고충상담원이 근무하는 부서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(이하 “고충전담창구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직원 2인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되, 남성 및 여성 직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.

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·조언 및 고충의 접수
2.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
3.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·조정
4.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

5.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?홍보 등

④ 고충전담창구에는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(별지 제1호서식)을 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성희롱 고충의 신청)

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·전화·통신·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.

제8조(상담 및 조사)

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·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,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,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
④ 고충 상담원은 조사과정에서 당해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(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)

① 총장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당해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사안에 관계되는 자의 신원 및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(조사결과와 보고 등)

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총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.

제11조(성희롱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

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,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인과 직원추천자 2인으로 구성 하되,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, 그 밖의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결원되어 새로 지명되는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위원회의 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4분

의 3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조사의 종결)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한다.

제14조(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)

① 총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희롱 사안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전보,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 당해 조치가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총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제재를 하여야 한다.

③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을 처리한 후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성희롱 고충 상담실 : 보건진료소
상담원 : (남) 김관식 970-3171
(여) 신수향 970-3187